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에 대해

김 영 석
극동건축연구소



건설부 공고 제14호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공문을 늦게나마 접하고 나서 평소 느꼈었던 점을 적어볼까 한다.

개정안중 제25조·26조에는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일정수 이상의 책임건축사를 지정토록하여 당해 책임건축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안을 보고나서 과연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능력이 이렇 정도로 없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건축사들에 대한 행정담당자들의 불신감에 불쾌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그 취지가 무엇인건 간에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정의' 와도 상반되는 그야말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에 앞서 건축사법 제2조1호와 3호의 건축사의 정의에 의하면 '건축사란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건축설계시에는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자' 로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설계한 당해 건축사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그 책임을 마치 당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릇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책임이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케 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담당 의사에게 있는 것이지만 동료 의사가 대신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볼때 개정안 25조·26조의 내용에서 연대책임건축사 지정의 의무화는 母法인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의 책임설계의 정의를 무색케하는 案이 아닌가 한다.

물론 개정안이 연대책임건축사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취지로서 건축물의 하자 발생시 건축사의 재정적인 책임분담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가지 더 이해가 안가는 점은 개정안에 또 나온 것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건축사의 인원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건축사라 하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과 자질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건축업무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건축물의 규모(일반적으로 층수와 연면적)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혼자서는 대규모의 건축물은 설계할 수 없고 여럿이서만 설계가 가능하다는 논법은 건설업자들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정부가 구조안전의 면을 고려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건축사의 자격요건에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든지, 또는 종전처럼 건축물의 규모별로 건축사의 자격기준등급(1급·2급)을 나누든지, 아니면 구조·설비·시공·기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들의 의무적인 협조를 받게하는 방법이 더 타당한 일아 아닐런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건축사에게 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고 단지, 단독·종합사무소의 등록과정에서 건축사의 인원수에 의한 설계업무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단독으로 하고자하는 건축사에게 작

품의 표현의 기회를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줄로 안다.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기의 개성을 살려 활동하고자 하는 건축사가 정부가 제한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이외의 또 다른 건축사를 찾아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건축사의 개성과 창작의지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종합사무소란 명칭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사무소의 등록과정에서 건축분야 외에 다른 여러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만 건축사 2인 이상의 합동의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재정상이나 그 밖의 형편상 단독으로 사무소를 개업하기 어려운 건축사들에게 합동으로 개업할 수 있게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건축사란 훌륭한 엔지니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술적 소질을 가진 건축 예술의 창조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건축사의 단독·종합의 구분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업무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창조적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단독 건축사의 제한없는 건축 표현의 기회 여와 성장하는 건축후학들의 희망을 키워주는 측면에서라도 이 문제를 당국이 다시 검토해봤으면 한다.

아름튼 건축사의 업무에 있어서 건축물의 규모 또는 사무소의 단독·종합의 등록에 의한 업무의 제한이라던가 책임 건축사의 별도 지정 등은 선진화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하나의 장애요인이라 생각하며 건축사법의 정의와도 상반된다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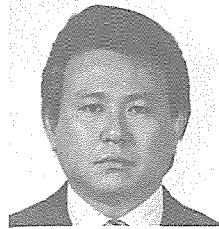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름다운 도시와 훌륭한 건축 예술물의 창조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자를 건축사시험에 합격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동등한 자격 상태에서 국가가 널리 작품을 공모할 기회를 줌으로써 작품의 경합에 의한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반대로 건축사의 활동을 건축물의 규모나 건축사의 인원수에 제한한

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본다.

「작품과 상품」



김 자 호
(주)간삼 건축사사무소

세상 사람들의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으며, 상대방에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긋나게 되면 느끼는 감정 또한 모두 같다는 평범한 진리가 요즘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오래전의 일이다. 외국에서 한창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도취에 만족하여 일하며 지내고 있을 때인데, 어느날 건축주로부터 설계를 의뢰(물론 회사에서)받고는 의미깊은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흘려보냈으나, 그 뜻이 무엇인지 요즘에 와서는 과연 그때 그 이야기들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설계 Project의 내용인즉 어느 지역의 mansion계획이었다. 그 때는 솔직히 젊은 기분에 나름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 아니 좀더 별다른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열심히 자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는 이상아릇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건축주에게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였다. 설명을 다 듣고 난 건축주 왈,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설명내용은 잘 알아들었는데,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순 당황하였다. 내 판에는 열심히, 무엇인가 좋은, 값어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상대방 건축주가 기대하였던 것은 보다 좋은 「상품」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알아들지 못하고는 엉뚱한 대답만 열심히 하였다.

다시 건축주 왈, 「이 project의 사업은 나로서는 중대한 Bussiness이고, 또한

이 mansion을 사려고 하는 입주자는 전 생애에 한두번 장만 할 수 있을까말까 하는 거금을 만들어 최고액의 도박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만큼 가치있는 좋은 상품을 원할 것인즉……」

이야기를 대략 생각하고 여하튼 만족할 만큼의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mansion의 판매가 시작되어, 추첨일에 설계자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입주자의 추첨이 끝나고 당첨자는 기분이 좋아 분양수속을 하느라고 정신없었으나, 당첨이 안된 추첨자 역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알고 보니 현관에서 그 회사 직원이 이번 추첨에는 애석하게도 당첨이 안되었으나 다음 기회에 다시 이 회사를 찾아주면 감사하겠다는 인사와 더불어, 조출한 참가 선물까지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아! 설계자가 설계만 잘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여 준공시기가 다가오니 준공검사가 무려 5번을 거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 - 1) 시공회사 자체 준공검사 2) 설계감리자의 준공검사 3) 건축주의 준공검사 4) 대관청의 준공검사 5) 입주자 준공검사. -

「작품에서 상품까지」

항상 좁은 소견에서 설계에 임할 때는 건축주를 의식하기보다 자기만족에 즐기는 작품행위를 하다보면 가끔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돌이킬 수 없는 신용 상실과 심지어는 불신마저 초래하니, 요즘에는 완벽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작품에서

이어지는 상품까지를 만들어 주어야만 소기의 성과가 있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단 하나 있는 것 같다.

좋은 작품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획이 세워져야만 모든 진행이 문제점없이 시행되는 데, 이 기획사항을 건축주가 항상 무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계획없는 건축주, 쉬운 말로 풀어서 「무식한 건축주」를 상대할 때에는 건축가의 업무한계는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에 나열되어 있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해 주어야만 하며,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그나마의 설계비조차 안 주려고 하니) 무엇인가 잘 못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요즘의 건축주는 적은 작품비(수고비)를 지불하고는 몇 배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를 하고 책임까지 전가하려는, 거꾸로 자기만족의 태도를 취하려는 건축주가 간간이 출현하는 것을 대할 때에는 「작품」을 만들어 내려는,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 내려는 건축가가 어떠한 위치에서 업무수행을 하여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중심을 못잡을 때가 왕왕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좋은 「작품에서 상품까지」를 기획하려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건축가가 책임지어주는 Turn Key 설계(기획에서 감리, 관리까지)를 하여야만 하고, 이에 응당하는 충분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어야만 「작품」과 「상품」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한다.

자기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머리가 회어지어 손가락을 못 들게 되는 순간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충실하여야만 좋은 작품과 상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중이다.